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제출〉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25호)

2024. 9.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병기 · 이기현 · 모경중 · 윤건영 · 민병덕 · 박상혁
윤종균 · 정동영 · 박 정 · 이개호 · 한준호 · 임미애
이정문 · 정성호 · 황운하 의원(15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 의안번호 : 34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에서 서류 등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요구를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조(서류 등의 제출 또는 증인출석 등의 의무) ----- ----- ----- ----- ----- ----- 「개인 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¹⁾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언감정법”)」 제2조²⁾는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 등을 받은 경우 「증언감정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④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표-2] 「증언감정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예외 사유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을 요구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로서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
2.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본인 또는 친족 등의 형사 책임과 관계된 증언, 감정 또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3. 증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3)에서 개인정보처리자⁴⁾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⁵⁾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민감정보⁶⁾’와 ‘고유식별정보⁷⁾’ 및 ‘주민등록번호’는 그 처리⁸⁾를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6) ‘민감정보’는 개인정보 중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등을 의미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8조).
- 7)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의미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9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⁹⁾

[표-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감정보 등의 처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	주민등록번호 ¹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1.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¹¹⁾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¹²⁾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8)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A대학교 대학원 휴학 시 제출한 병원진단서(민감정보)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을 위하여 A대학교가 해당 진단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민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등 관련 법령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청문 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민감정보인 진단서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하여 국회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음(「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4-050호).

10)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만, 관행적 동의 절차에 따른 오·남용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보호를 다른 고유식별정보보다 더욱 강화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11)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병역법」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를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① 성년후견등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후견의 종류, 심판을 한 가정법원, 사건의 표시 및 재판 확정일

2. 피성년후견인등의 성명, 성별,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령상 비밀·비공개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음.¹³⁾

[표-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1. 법령상 비밀·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이와 같이 「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실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13) 참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한 활동에 적용하는 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음(최석림 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현안보고서 제104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p.7).

이에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등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안전심의 및 국정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활용에 있어서도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¹⁴⁾가 보장되고, ‘과잉금지 원칙’¹⁵⁾이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그 수집 또는 보유만으로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로서 엄격히 보호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¹⁶⁾

따라서, 국회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특별한 요건이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율할 경우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⁷⁾

둘째, 현행 「증언감정법」에서 이미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무에서는 「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와 개별법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14)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5)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6) “사상이나 신조에 관한 정보, 범죄나 전과사실, 병력 등과 같이 그 자체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드러내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그 수집 내지 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활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강화된 보호를 필요로 한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결정)

17)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따른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요청을 받아 피의자 검거를 위해 ‘요양 급여내역’(민감정보)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정보제공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결정).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5] 개별 법률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직접 규정한 입법례

근거 법률	요구 목적	제출대상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85조의6)	○ 국정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	○ 납세자의 과세정보(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공개회의에 제공)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
「변호사법」 (제89조의9)	○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	○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
「한국투자공사법」 (제37조)	○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외에는 외부에 공개 불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열람·복사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 외부 공개 불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

문 의 처
02)6788-5016